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547
-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찬성자 42명)
- 발 의 일 : 2024년 2월 2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안 제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나. 입법예고(2024.2.14 ~ 2.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 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등 신설).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5조(사업)	-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제1항제2호 신설) - 안전물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 (제2항 신설) - 제1항의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기준 및 지원 방법을 시장이 정함(제4항 신설)

※ 금번 회기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 2024년 2월 5일 운영회 의원 발의)도 강력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고, 시민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을 갖춘 휴대용 안전물품을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안전물품 지원사업(안 제25조)을 신설하고 있음. 동 조례는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조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2월 7일 회부되었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경찰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도 총 44건(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으로¹⁾ 이상동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10월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여 “여성안심물품 지원” 사업으로 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비상벨 및 안심 경보기 세트(안심물품 지키기(ME))를 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1만세트 중 1차로 총 5,436세트(현장 1,458개, 인터넷 3,978개, 2월 13일 기준)가 배부되었고,²⁾ 현재 2차 배부를 준비하고 있음.
-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하였던 “여성안심물품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초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실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가 편성한 예산 5억원은 이체되지 않고 재배정이나 타부서 사업(여성가족정책실)으로 사용될 예정임.

안심물품 지키미(ME)란?

· 지키미 세트 안내



휴대용 SOS 비상벨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입니다.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세계일보, 경찰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총 44건”, 2024년 2월 7일자 보도 참고.
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2024년 2월 15일 제출자료 참조.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일정(인터넷 신청접수)



※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많이 기다리셨죠? 안심물품 ‘지키미’ 28일부터 신청, 2023년 12월 27일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896?tr_code=snews, 2024년 2월 16일 방문)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음.³⁾

3) 대법원(2015.10.15. 선고 2015도11392)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720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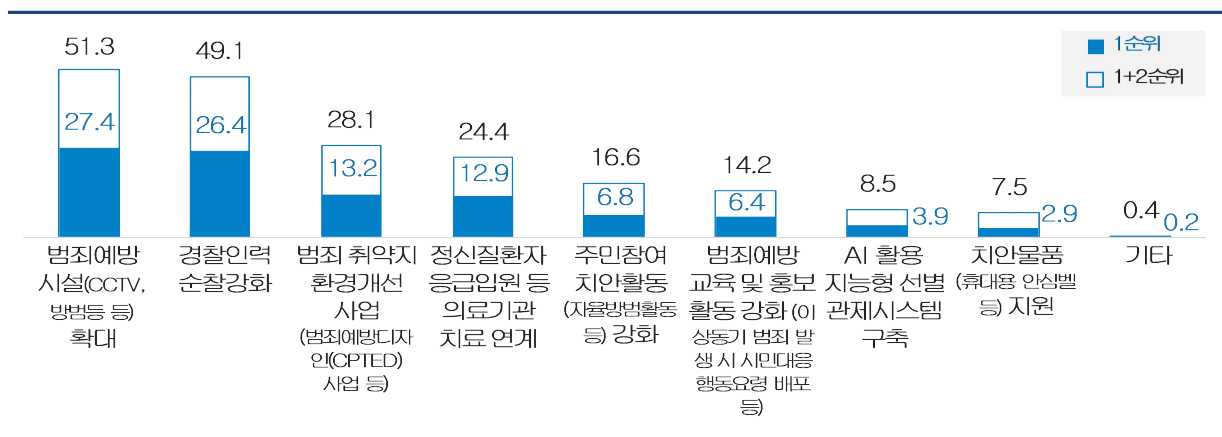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만,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 주변 군중 유무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물품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욱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대시민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시민들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범죄예방 시설(CCTV, 방범등 등) 확대(51.3%), 경찰인력 순찰강화(49.1%),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등)(28.1%)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바, 시민이 원하는 사업과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지원”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Q5. 시민 안전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보도자료, “서울시 자치경찰위,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발표…시민체감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 2023년 12월 13일자 재인용.

나. 세부내용 검토

1) 안전물품 지원사업(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

-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시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라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범죄예방보다는 범죄상황 발생시 주변 또는 경찰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고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제5조(사업) ① ----- ----- -----. 1. (현행과 같음) <u>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다만,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목적과 이유가 없는 범죄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매우 광범위하여 사업 내용도 모호해질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거나, 전례답습적인 사업운영시 불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전물품”이란 법령상 정의가 없고,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물품’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을 말하는 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안전물품”은 지니고 있으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모든 유체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보장’과 ‘사회 서비스’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될 경우 본 개정조례안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의 완결성 확보방안(사업 시행 전 ‘보건복지부와 협의’ 우선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 윤영희 의원 발의)도 “여성폭력의 예방·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안 제25조제1항 신설)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과의 중복적인 부분은 없는지, 자치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바,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물품 지원 대상 등(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안 제5조제2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의 대상을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생략) <u><신설></u> 2. ~ 4. (생략) <u><신설></u>	제5조(사업) ① ----- ----- ----- 1. (현행과 같음) <u>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u>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에게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u>

○ 안전물품의 지급대상을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과 학생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⁴⁾ 본 개정조례안에서 서울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과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963만 8,799명(내국인 938만 6,034명, 등록외국인 25만 2,765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며,⁵⁾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은 1,100만 7천명이고(2024년 2월 15일 기준), 그 외 서울시 소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663만명, 서울시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는 91만명 규모로,

4)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임(법제처, 안전번호 22-0237, 회신 2022.9.28.) 참조.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23.12.31. 기준)”, 2024년 1월 자료 참고.

-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이 꼭 필요한 범죄피해 우려자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우선순위를 정해 범죄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금 대상자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서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 생활인구 현황

(2024.02.15. 기준)

일일평균 생활인구

11,007 천명



* 서울 생활인구 추계 대상은 집계구 단위의 내국인 생활인구,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단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행정동 단위의 서울에서 생활하는 서울외 지역 인구(대도시권 생활인구)임.

** 생활인구 추계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자료, 건물 DB 등 서울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KT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함.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서울빅데이터-서울 생활인구

(<https://data.seoul.go.kr/dataVisual/seoul/seoulLivingPopulation.do>, 2024년 2월 19일 방문)

※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3.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⁶⁾

〈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사업장수(개소)	가입자(명)	피부양자(명)	총 적용인구(명)
487,282	6,631,521	2,864,850	9,496,371

* 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3,638,602명,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256,956명, 지역가입자 2,735,963명 합계임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자료갱신일 2023.10.25.
(<https://data.seoul.go.kr/dataList/42/S/2/datasetView.do>, 2024년 2월 17일 방문)

〈 2023년 서울소재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현황〉

구 분		학교수	부설대학원	재적학생수(명)
학 부		67	—	764,018
대학원	대학원대학	21	—	5,502
대학원	부설대학원	—	385	142,412
대학원		21	385	147,914
전체	소계	88	385	911,932

* 학부 학교수는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사내 대학, 기능대학 등을 모두 합친 학교수이며, 대학부설 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재적학생수는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포함됨.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23년 행정구역별 고등교육기관 개황
(<https://kess.kedi.re.kr/>, 2024년 2월 17일 방문)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시행 2023년 1월 1일)되었고, 서울특별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음.

- 안 제15조제4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영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서울시민 및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 학생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물품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전물품 지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 특성을 갖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여부, 안전물품의 효과성, 사업 내용의 구체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 사업대상을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함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